

1. 개정이유

산림생태원 시설 중 건축물 설치 비용 예산을 제한하던 것을 목구조건축물은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목구조건축물 시설을 활성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산림생태원 시설 중 건축물 설치 비용 예산 제한 예외 사항으로 「건축법」 제4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목구조건축물 규정(안 제18조제1항)

나. 산림생태원 조성 주체에 산림청장 추가(안 제18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후단 중 “하여야 한다”를 “하되, 「건축법」 제4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목구조건축물의 설치비용은 제외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방자치단체”를 “산림청장, 지방자치단체”로,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생태숲의 관리 등)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산림생태 원의 시설설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. 이 경우 산림생태원의 시 설 중 건축물(「건축법」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 한다)의 설치비용은 산림생태원 총 사업 예산의 2분의 1 이내로 <u>하여야 한다.</u>	제18조(생태숲의 관리 등) ① -- ----- ----- 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하되, 「건축법」 제48조의3제1 항제1호에 따른 목구조건축물 의 설치비용은 제외한다.</u>
② <u>지방자치단체</u> 의 장 또는 지 방산림청장은 생태숲의 산림생 태계 안정과 산림생물 다양성 유지·증진을 위하여 식생 조사 · 식생 복원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 <u>하여야</u> 한다.	② <u>산림청장, 지방자치단체</u>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해야</u> 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